

'26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 신청절차

-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7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	추가 서류제출
기숙사로 주택, 고사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
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업 : 17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타지키스탄)
-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

- (특화훈련 참여) E-9 근로자가 '직무기초·산업안전·한국어' 교육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에 대해 5점 가점 부여
 - * 입국 이후 1년 이내 E-9 근로자 대상으로 1~8주(평균 4주, 140시간) 한국어 및 문화교육, 산업 안전, 직무기초 훈련에 참여 시 훈련비·인건비 등 지원
- (외국인 안전리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무관)를 안전 관련 활동* 전개하는 '사업장 안전리더**'로 지정·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5점 가점 부여
 - *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신규직원 멘토링, 순회 점검 및 작업 전 안전 점검(TBM) 등 활동, 안전보건표지 번역 검사 등 수행
 - **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수행하는 외국인 '지역 안전리더' 지정·운영은 가점 사항 아님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광업		서비스업·호텔·콘도업			임 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일반	택배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	4명	12명	1명~10명 이하	15명
11명~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10명 이하	6명	18명	11명~50명 이하	20명
51명~100명 이하	35명	11명~15명 이하	10명	30명	51명~100명 이하	25명
101명~150명 이하	40명	16명~20명 이하	14명	42명		
151명~200명 이하	50명	21명~100명 이하	20명	60명		
201명~300명 이하	60명				100명~	30명
301명~	80명	101명~	25명	75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 사업장별 고용한도 조정

- (비수도권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를 현행 20% → 30%로 상향(다만, 내국인근로자수 초과 불가)

내국인 근로자수	허용인원	비수도권 추가 <기존 20%>	비수도권 추가 <상향 30%>
1-10명	내국인수 + 10명	1.2 x (내국인수 + 10명)	1.3 x (내국인수 + 10명)
11-50명	30명 (내국인수 2배 이내)	36명 (내국인수 2배 이내)	39명 (내국인수 2배 이내)
51-100명	35명	42명	45명
101-150명	40명	48명	52명
151-200명	50명	60명	65명
201-300명	60명	72명	78명
301명 이상	80명	96명	104명

- (U턴기업)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U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 허용,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 삭제
 - * 현재 U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추가고용(50인 한도) 허용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 전북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 제2조제3항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KBIZ 중소기업중앙회